

---

청소년 임금체불 등  
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 
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

---

청소년 권익 위원  
회

# 목차

---

1

제안이  
유

2

신구문  
대조표

3

기대효  
과

# 청소년들의 임금 관련 피해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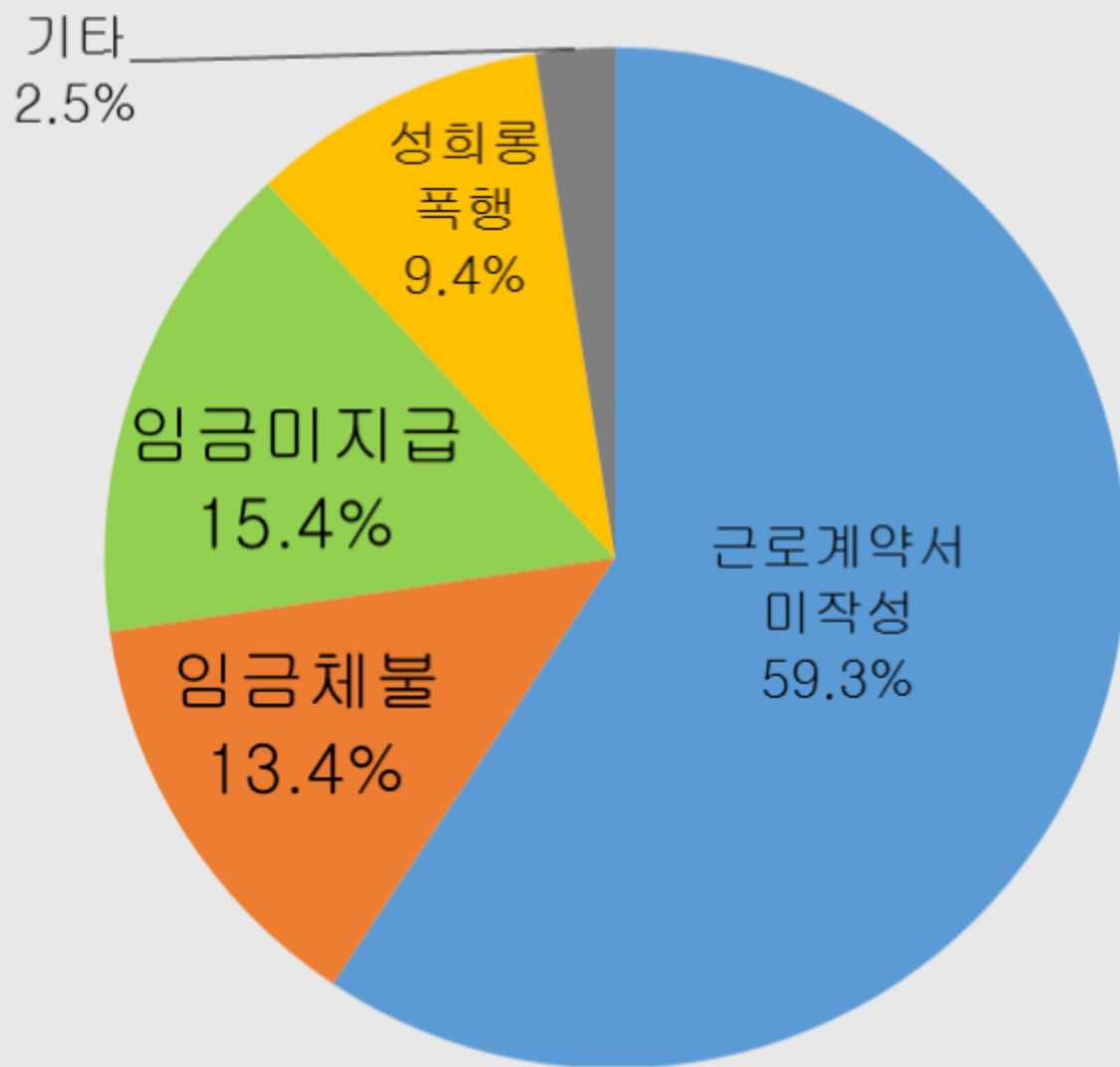
## #밀린 임금으로 10원짜리 동전 1만개 지급

울산 중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(19)양은 업주에게 체불임금 32만원을 요구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.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3포대로 지급한 것이다.

A 양은 용돈을 벌기위해 두 달 가량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.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요구 했지만 주지 않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.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A 양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주는 보복성 임금 지급을 했다. 또한 당시 최저시급이 5580원이었지만 A 양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580원이나 낮은 시급인 5000원으로 계산돼 임금을 받았다.

이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았다.

# 아르바이트 청소년 주요 부당행위



# 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
신 설	<p>제68조의2(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)</p> <p>①사용자의 임금 지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나 차별적 처우라도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때 법적 조치는 각 호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시에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</li><li>2.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시에는 최저임금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.</li><li>3.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장·야간 수당 미지급 시에는 제109조에 따른다.</li></ol>

# 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
<p>제109조(벌칙)</p> <p>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 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 2,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/p>	<p>제109조(벌칙)</p> <p>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 2, 제46조, 제56조, 제65조, <b>제68조의2</b>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 2, 제46조, 제56조 또는 <b>제68조의2</b>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/p>

# 기대효과

---

1.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사업  
체 점주들의 부당 행위 처벌
2. 청소년의 권익 침해 사례 감소
3. 청소년의 경제활동 보장

---

감사합니다

---